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2065 판결 [계약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2. 1. 19.

판 결 선 고 2022. 2. 16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3. 선고 2019가단529029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2019. 6. 4.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와 사이에, 원고가 소유하던 C 주식회사의 주식 51% 및 경영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, 피고는 2019. 6. 31.까지1) 원고에게 계약금 140,000,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2020. 3월 결산이 끝난 후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 1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. 2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와의 위 약정은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또는 2019. 7. 29.경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나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위 약정을 무효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우현, 판사 허일승, 판사 김수경

1) 6. 30.의 오기로 보인다.